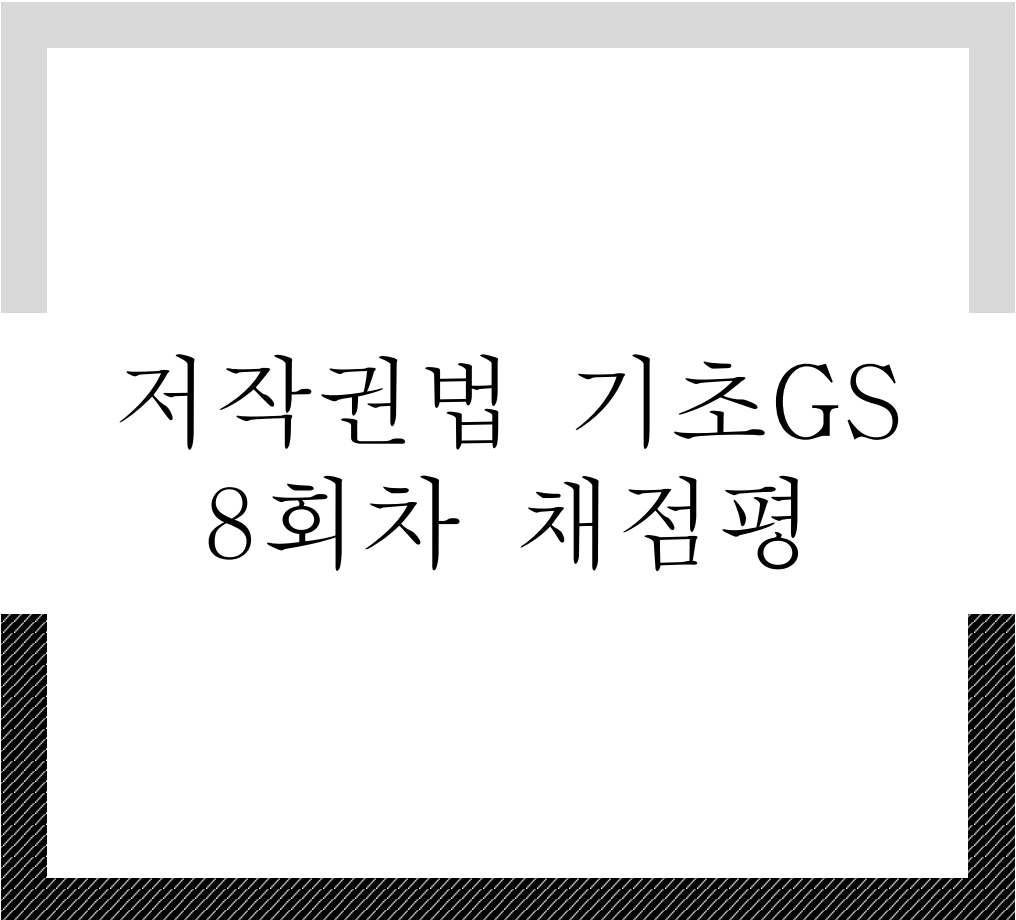


김선화 / 3월+4월 / 기초GS / 8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응시인원
556312	19.5	8.5	0	0	28	1	1.82%	55
556363	16.5	10	0	0	26.5	2	3.64%	
557828	15	10.5	0	0	25.5	3	5.45%	
550636	15	10	0	0	25	4	7.27%	
556434	16	8.5	0	0	24.5	5	9.09%	
556085	15	8.5	0	0	23.5	6	10.91%	
548731	11.5	11.5	0	0	23	7	12.73%	
556714	14	9	0	0	23	7	12.73%	
557686	16.5	6.5	0	0	23	7	12.73%	
556282	16.5	6.5	0	0	23	7	12.73%	
556948	17	4.5	0	0	21.5	11	20.00%	
559332	15.5	6	0	0	21.5	11	20.00%	
557838	14	7.5	0	0	21.5	11	20.00%	
558051	13	8	0	0	21	14	25.45%	
558124	13.5	7	0	0	20.5	15	27.27%	
561836	13.5	7	0	0	20.5	15	27.27%	
556524	10.5	8.5	0	0	19	17	30.91%	
556383	9.5	9.5	0	0	19	17	30.91%	
556412	10.5	8.5	0	0	19	17	30.91%	
556839	9	9.5	0	0	18.5	20	36.36%	
555744	9	9.5	0	0	18.5	20	36.36%	
556409	14.5	4	0	0	18.5	20	36.36%	
548623	7.5	10	0	0	17.5	23	41.82%	
556423	11.5	6	0	0	17.5	23	41.82%	
558614	10	7.5	0	0	17.5	23	41.82%	
558698	17	0	0	0	17	26	47.27%	
556203	9.5	7	0	0	16.5	27	49.09%	
557869	11.5	4.5	0	0	16	28	50.91%	
559788	15	1	0	0	16	28	50.91%	
561039	13.5	1.5	0	0	15	30	54.55%	
556377	9	5.5	0	0	14.5	31	56.36%	
556590	12.5	2	0	0	14.5	31	56.36%	
559440	10	4.5	0	0	14.5	31	56.36%	
556301	14	0	0	0	14	34	61.82%	
556358	10.5	3.5	0	0	14	34	61.82%	
558518	7	7	0	0	14	34	61.82%	
559189	6	8	0	0	14	34	61.82%	
557074	9.5	4	0	0	13.5	38	69.09%	
557909	7.5	5.5	0	0	13	39	70.91%	
558030	6.5	6.5	0	0	13	39	70.91%	
559305	7.5	5.5	0	0	13	39	70.91%	
557833	6.5	6	0	0	12.5	42	76.36%	
557810	10	2	0	0	12	43	78.18%	
558077	10	2	0	0	12	43	78.18%	
556685	9	2.5	0	0	11.5	45	81.82%	
556376	11.5	0	0	0	11.5	45	81.82%	
549662	10.5	0	0	0	10.5	47	85.45%	
556324	7	3.5	0	0	10.5	47	85.45%	
557793	10	0	0	0	10	49	89.09%	
556443	4.5	4	0	0	8.5	50	90.91%	
560897	8.5	0	0	0	8.5	50	90.91%	
559483	7.5	0	0	0	7.5	52	94.55%	
559375	5.5	1.5	0	0	7	53	96.36%	
559712	2.5	4	0	0	6.5	54	98.18%	

554788	3	2	0	0	5	55	100.00%
--------	---	---	---	---	---	----	---------



저작권법 기초GS
8회차 채점평

김선화 변리사

유화정 변리사

문제 1

논점 이름

설문 1

- 甲의 영상 제작 행위를 2차적저작물작성 또는 편집저작물 작성 행위로 포섭하신 분들께는 문제에 관련된 조건이 주어진 바가 없고 해당 권리들에 대해 권리양도추정 법조문이 없는 바, 부분점수 부여하였습니다.
- 제99조 규정 범위에 다른 형식의 별개 영상물 제작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특례 판례는 창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답안지 판례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영상제작자’라 할지라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지 않으면 저작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문제에서는 甲이 저작자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으므로, 논리에 따라 B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공동저작자로 볼 수 있다고 하신 분들께 부분 점수 부여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설문 2

- 저작물 이용허락(제46조) 조문 쓰신 분들께 추가 점수 0.5점씩 드렸습니다.

설문 3

- 丙의 저작권법상 침해사유와 위반 사항을 나누어서 검토하고 그에 대한 벌칙 조항을 올바르게 찾아 쓰면 되는 쉬운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총 평

안녕하세요. 벌써 마지막 회차입니다. 그동안 기초 지에스 들으시면서 저작권법을 처음 접한 분들은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지시기도 하셨을 텐데, 지난 8회차 동안 저작권의 세계관에 많이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문제 1번이 길고 검토해야 하는 조항과 행위, 주장이 많아서 호흡이 길게 느껴지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제 2

권리관리정보 및 라벨

설문 1

- 권리관리정보의 의의와 그 제거 금지조항을 위반한 을의 행위에 의해 침해된 갑의 저작권을 행위별로 검토하고 그 형사상 책임을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설문 2

- 라벨이 주논점인 문제로, 라벨의 의의와 라벨 위조 및 소지 금지 조항 위반 사유에 대해 검토하고 사안에서 병의 형사상 법적 책임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총 평

문제 2번의 경우 논점이 비교적 명확하고 소설문의 개수도 적은 편이라 어렵지 않게 해결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주도 고생 많으셨고 실전에서 만나요!!

문제 - 195

I. 실용 (1)

1. 방영 행위 - 방송

(1) 방송 - 일정한 기간 제한

방송은 방송권 중 권리가 동시에 수반하게 할 목적의 등. 영상 또는 음향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안

Ⓜ이 ~~사~~ 이 사건 예능 케이블 TV 채널에 방영한 행위를 방송에 해당한다.

2. 영상 제작 행위 - 복제

(1) 복제 - 일정한 기간 제한

복제는 인쇄·촬영·복사·녹음 등의 방법으로 원사건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을 고정,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안

Ⓜ이 이 사건 예능의 오락 영상을 제작한 행위는 복제에 해당한다.

3. Ⓜ 권리행위 정돈.

(1) Ⓜ의 지위 - 영상제작자 (일정한 기간 제한)

① 영상제작자는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정제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 또는 Ⓜ 예능 프로그램을 정제하여 기획하고 제작한 책임자로 영상제작자에게 해당한다.

(2) A의 지위 - 실연자 (3항제2조 제4호)

①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구연·낭독 그 밖의 예술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실연하는 자를 말하며, 지시, 연출하는 자를 포함하고,

② A는 예술 프로그램 진행자인 실연자라 인정한다.

(3) B의 지위 - 영상저작물 저작자 (3항제2조 제2호)

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② B는 영상 촬영·편집자라 예술적 장면 구성 및 편집 방식 등 창작자인 표현해석에 기여하여 영상 저작물인 예술의 저작자라 인정한다.

(4) 영상제작자의 권리

1) 3항제 10조 제1항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등을 이용할 권리이다.

2) 3항제 10조 제2항

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할 권리이다.

~~(4) 사안~~ 3) 사안.

① 이 사건 영상제작자라 A라 B는 각각 영상저작물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라 영상제작자라라 볼 수 있어,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추정 가능하다.

(5)

② 양면 (취사비)

영상저작물 10아 별개의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본래 창작물의



이용이 아닌 별개 새로운 영상제작을 제작이 이용한 것이므로 양 당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b) 2권

① 甲이 예능을 케이블 TV채널에 방영한 행위는 영상제작과 甲의
권리범위 내 행위가지만, ② 甲이 예능의 핵심 장면만 취리
3분 분량의 8억 영상 제작한 행위는 甲 권리범위 밖의 행위이다.

6.5

II. (2)

1. 2 주장 1 타당성 - 적격

(1) 이용허락 - 조 제 46조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0.5

(2) 신탁계약 - 90조

신탁계약은 채권자 범위에 불과하므로 신탁 종료된 경우 승계 이익
절제하는 사정이 없는 한,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에
수탁자의 이용행위를 주장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3) 사안

甲의 이용행위는 2과 C가 맺은 신탁 계약 ^{종료} 2026. 1월 1일
이후 2026 7월 1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신탁관계가 종료되고
나서 이용했으므로 C의 허락받았다는 이유로 甲은 2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4) 소결

2 주장 1은 타당하다.

0.5

2. 2 주장 2 타당성

~~(1) 과잉특허 사용권한 위반 사용이 저작권 침해~~

(1) 저작물의 영상화 - 조항제 99조.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복제 배권.

각색등을 포함하여 허락한 것인 주장한다.

(2) 영상화 의미- 취(複製)

'영상화'는 특별한 변경 없이 베껴오거나 사용하는 것은 포함된다

0.5

(3) 시간

무엇 의미 음악의 영상화에 대한 허락은 받아 이를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으로 삽입한 행위는 영상화에 포함되므로 허락 행위

나 행위이다. 따라서 침해 부정된다

(4) 소결

2 주장 2는 부당하다.

0.5

II. 질문 (3)

1. 침해사유.

(1) 복제 - 조항제 2조 제 2항

~~저작이 영상화에서 상명 중인 예능은 복제 행위이며 권리가 침해~~

독립한 행위를 저작재산권상 복제에 해당한다.

0.5



(2) 진정 - 조항제 22 조 10호

주요 위반한 영상을 인터넷 카페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복제에 해당한다.

(3) 소결

주요 위반한 영상자료를 복제·전송함으로써 영상자료를 저작권
침해권, 전유권을 침해했다.

2. 위법사항

(1) 영상자료를 무단 금지 - 조항제 104조의 6.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자료를 실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권침해행위의 허락 없이 무단, 광범위하게 사수한다.

(2) 사안

주요 영화관에서도 실영 중인 영화를 무단 복제하여 전송함으로써
본인 위반하였다.

3. 벌칙

(1) 복제권, 전송권 침해죄 - 조항제 136조 제1항

복제권, 전송권 침해에 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하다.

(2) 영상자료를 무단 금지 위반 - 조항제 137조 제1항 제1호

주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하다

- 끝 -



[문제-2] 115

I 실문(1)

1 2 지각권 행사 위반사항(1) - ~~권리관리의 권리~~ ~~제기금의 위반~~
~~사~~ - 권리관리의 권리 ~~제기금~~ 제기금 위반

(1) 권리 관리 권보 의의 (제 23 조 29항)

지각권을 식별 또는 지각권자 식별 등 위하여
지각권이 불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2) 권리관리의 권리 제기금 (제 104조의 3)

누구든지 지각권한 것이 지각권 침해 위반 사실
있거나 라고 양지 못하고 그 권리관리를 제
제기 - 변경하는 해위 할 수 있다.

(3) 사안

그은 권외책 라일에게 이 사건 중화 제1항.
제2. 이등 조건 권보가 같은 제1항인 이 사건
권외권 상해한 바, 제 104조의 3 제1항의
하이다.

(4) 형사상 책임 (제 136조 2항 3의 4항)

한으로 면의 영리 목적으로 제 104조의 3 제1항
위반 시 제1항 이하 징역 또는 제1항 이하 벌금
처하는 바, 그은 해당 제1항 제1항.

2 2 지각권 행사 위반사항(2) - 복제권 권보

(1) 복제권 (제 136조) 침해



1. 특정권행사 위반사항 - 라벨 요구 권리 위반

(1) 라벨 의무 (제 22 조 2호)

특정권이 특정 권항에 따라 제공된 것임을
누가든에게 대해 특정물에 부합되거나 그러한 불합치
사실을 고안된 점이다.

(2) 라벨 의무 권리 (제 10조의5) ~~제 22 조~~ 2호

~~특정권 등의~~ ~~상당한 불합치~~ 함께 배드라는 표시
~~하는~~ ~~점이다.~~

특정권 등의 라벨을 불합치 불특정에 부합하기 위해
유리한 개별 배드 문구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3) 사안

특수 이 사건 동화 불합치 불특시 2 말로써
정확한 불특시라기 위하여 상당한 라벨을 부합하여
정확한 불특시 요구 후 상당한 바, 제 10조의5
2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0.5

2. 행사행위 (제 22 조 2호 2의6호)

제 10조의5 위반한 경우 관련 이하 정액 또는 권말
이하 범위에 해당한다

3. 결론

특수 행위 이 사건 동화 불합치 불특시 정확하여
정확하여 정확하여 정확하여 이 사건 배드 위반하여

변경한 바 제 104조의 5 본 위법 행위, 이에
대하여 제 136조 2항 중의 6은 다른 형사상 책임을
안다.

[글]

-이 하여 백-

